



자연과학대학

수신 전문연구요원 학부(과) 15개

(경유)

제목 전문연구요원 무단결근 등 복무연장 산정기준 개선 알림

1. 관련근거

가. 「병역법」제41조제2항 및 「병역법시행령」제89조제2항

나.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-570(2022.1.17.), 학생지원과-891(2022.2.3.)

2. 위와 관련하여 전문연구요원의 '무단결근 등'으로 인한 복무연장시 '무단결근 등' 해당일수를 복무기간에서 제외토록 다음과 같이 개선·시행함을 알려드리니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'무단결근 등'으로 인한 복무기간 연장일수 산정기준

: 무단결근과 무단지각·조퇴·외출의 누계 8시간은 해당 기간을 복무기간에 미산입하고, 무단결근과 무단지각·조퇴·외출의 누계 8시간은 해당 기간의 5배수를 복무연장

현 행	개 선	적 용 예 시
무단결근 등 일수 복무기간에 산입. 무단결근 등 일수의 5배수 연장복무	무단결근 등 일수 복무기간에 미산입. 무단결근 등 일수의 5배수 연장복무	1일 무단결근 시 총 6일 복무연장 (무단결근일수 1일 + 무단결근 기간의 5배수 연장 5일)

나. 시행: '22. 1. 1. 이후 발생 무단결근, 무단지각·조퇴·외출(누계 8시간)부터 적용.

붙임 산업지원인력 무단결근 등 복무연장 산정기준 개선 알림(병무청공문) 1부. 끝.

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



팀장 이재순

학생부학장

2022.2.3.
전결
최희정

협조자

시행 자연과학대학-5030 (2022.2.3.)

접수 생명과학부-592 (2022.2.4.)

우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행정실 /

전화 02-880-6494

전송 02-889-6522

/ leejs@snu.ac.kr

/ 공개